

포르노와 종속화

임예인*

【요약】

포르노의 내용이 외설적이거나 음란하다는 일반적인 포르노 비판과 달리, 맥키넨과 드워킨은 포르노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는 점에서 포르노가 비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는 주장은 철학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런 비판에 맞서, 랭턴은 오스틴의 화행 이론을 적용하면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는 말이 철학적으로 유의미한 주장이 될 수 있으며, 이 주장이 실제로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논증한다.

그러나 랭턴의 논증은 현재 많은 비판에 직면해있다. 비판은 두 방향에서 제기된다. 오스틴의 화행 이론이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는 주장을 과연 유의미하게 만들어주는가? 종속화 주장의 유의미하다고 하더라도, 이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이 논문의 목적은 랭턴이 직면한 비판들과 그 후속 논의들을 검토하고, 그러한 비판들이 성공적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II에서는 랭턴의 논증을 간단히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III에서는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는 주장이 성립 불가능하다는 앤토니의 비판을 살펴보고, 그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IV에서는 랭턴 주장의 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술의 비판을 소개하고, 그 비판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 그리고 V에서는 술에 맞선 비앙키의 논증과 이에 대한 미콜라의 반박을 살펴본 뒤, 이들이 성공적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주제어】 포르노, 발화 행위, 종속화, 랭턴, 오스틴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강사.

** 논문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논평과 조언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I. 서론

포르노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포르노의 **내용**이나 **효과**를 쟁점으로 삼아왔다. 포르노는 대개 성기나 성행위가 포함된 음란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¹⁾ 혹은 그런 표현을 통해 청자의 성적 흥분을 도모하는 것²⁾으로 정의된다. 이런 논의에서 포르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포르노의 내용이 음란하다거나, 포르노가 성적 타락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르노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용이나 그 효과 때문에 포르노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

그러나 포르노에 관한 다른 관점의 비판이 있다. 페미니스트이자 법학자인 맥किनCatharine MacKinnon과 급진주의 페미니스트인 드워킨Andrea Dworkin은 1983년 작성된 반-포르노 법령을 통해, 포르노는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의 시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르노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한다.⁴⁾ 이것은 포르노의 내용이나 효과가 아니라 포르노가 그 자체로 무엇인가에

1) Tong (1984), p. 7. 이는 포르노가 지닌 음란성obscenity의 측면을 가리킨다. 음란성이란 “정숙함과 품위의 손상을 일으키고, 저속한 생각을 제시하며, 퇴폐적인 경향이 있는” 것을 총칭한다. (수전 이스턴 외, 김성한 역 (2010), p. 205.)

2) Williams (1979), p. 103. 수전 이스턴 또한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를 “그것을 읽거나 보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가지는 자료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수전 이스턴 외, 김성한 역 (2010), p. 206.)

3) 이런 입장의 논의에 대해서는 심영희 (1994)에 잘 정리되어 있다.

4) 맥किन과 드워킨의 종속화 주장에 관한 기존 국내 연구로는 주동률 (2006); 윤진숙 (2011); 홍남희 (2020)가 있다. 그러나 주동률과 윤진숙은 맥किन과 드워킨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포르노에 대한 자유주의적 옹호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포르노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주목하고, 홍남희는 대중매체 전반의 여성혐오적 문화와 그 안에서 포르노그래피의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에 관한 화행이론적 논의인 본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연구를 따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관한 주장이다. 이들은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⁵⁾ 만약 포르노가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종속화라면, 포르노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타인의 시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맥키넨과 드워킨의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포르노는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는 주장은 비정합적이며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것이다.⁶⁾

이러한 비판에 맞서, 페미니스트 철학자인 랭턴Rae Langton은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는 주장이 철학적으로 옹호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맥키넨과 드워킨을 옹호하려고 시도했다. 실제로 인디애나 주 남부지방법원의 판사인 바커Barker는 포르노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⁷⁾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의 판사인 이스터브룩Easterbrook은 포르노가 일종의 발화라고 말하는데,⁸⁾ 이것은 포르노가 일종의 발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포르노가 발화라면, 오스틴의 화행 이론에 따라 포르노는 일종의 행위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랭턴은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는 주장이 철학적으로 정합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랭턴은 경험적 연구들을 고려하여 포르노가 실제로 여성을 종속화한다고 결론내린다.

5) MacKinnon (1987)

6) 맥키넨과 드워킨의 주장에 대한 주요 반론은, 포르노는 행위가 아니고 표현이므로 그 내용이나 효과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을 뿐, 포르노가 그 자체로 뭔가를 행위한다는 주장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이들이 제시한 반-포르노 법령이 위헌이라고 판결내린, 인디애나 주 남부 지방법원의 바커 판사는 맥키넨의 주장이 일종의 사기, 혹은 교묘한 재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American Booksellers, Inc. v. Hudnut, 598 F. Supp. 1316 (S.D. Ind. 1984)), 동일하게 위헌 판결을 내린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의 이스터브룩 판사는 포르노에 대해서는 내용이나 그 결과의 측면에서만 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American Booksellers, Inc. v. Hudnut, 771 F.2d 329(7th Cir. 1985)) 또한 파렌트는 맥키넨의 주장이 철학적으로 옹호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한다.(Parent(1990), pp. 205-211.)

7) American Booksellers, Inc. v. Hudnut, 598 F. Supp. 1316 (S.D. Ind. 1984)

8) American Booksellers, Inc. v. Hudnut, 771 F.2d 329(7th Cir. 1985)

그러나 랭턴의 논증은 현재 많은 비판에 직면해있다. 비판자들은 오스틴의 화행 이론이 종속화 주장을 유의미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지적하거나, 종속화 주장이 유의미하다고 하더라도 포르노가 **실제로** 여성을 종속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이 비판들이 성공적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II에서는 랭턴의 논증을 간단히 소개할 것이다. III에서는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는 주장이 성립 불가능하다는 앤토니Antony의 비판을 살펴보고, 그 비판이 성공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IV에서는 종속화 주장의 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솔Saul의 비판을 소개하고, 이 비판이 성공적인지를 따져보겠다. 그리고 V에서는 솔에 대한 다른 방향의 비판인 비앙키Bianchi의 반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미콜라Mikkola의 재반박을 검토한 뒤, 이들의 논의가 과연 성공적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 논의를 통해서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에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 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글에서 말하는 ‘포르노’의 범위에 관해 말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포르노’는 성행위의 직접적 재현물 전부를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는 여성이 폭행이나 강간을 당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으로 묘사되는, 혹은 그렇게 대해도 괜찮은 대상으로 묘사되는 가학적 영상이나 글, 이미지에 한정할 것이다.⁹⁾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첫째, ‘곤조 포르노’라고 불리는 이런 가학적 포르노는 최근 그 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미국에서는 수익을

9) ‘곤조 포르노’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포르노 제작자의 인식, 의도, 목적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익명의 심사위원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곤조 포르노’에 대한 이 정의는 포르노의 **내용**에 대한 정의이며, 따라서 이 정의만으로 곤조 포르노 제작자의 인식, 의도, 목적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의는 실제 폭행, 강간 영상이 포르노 전문 사이트에서 유통될 경우, 그런 영상 역시 곤조 포르노로 포함시킨다. 그러나 이것이 이 영상의 제작자가 사건을 고발하기 위해 영상을 찍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제작자는 포르노를 제작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음에도 유통로 인하여 영상이나 사진이 포르노로서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창출하는, 주류 포르노 장르가 되었다.¹⁰⁾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학적 포르노는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¹¹⁾ 둘째, 본 논문에서 다루지는 주요 논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가학적 포르노에 한정하여 포르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¹²⁾ 따라서 이 글의 관심은 바로 이런 가학적 포르노에 있다.

II. 포르노와 종속화로서의 발화 행위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는 맥키넨과 드워킨의 주장은 비정합적이고 무의미하다고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랭턴은 맥키넨과 드워킨의 주장을 유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이스터브룩이나 바커는 포르노를 일종의 표현이자 발화로 간주하는데, 만약 포르노가 발화라면 오스틴의 화행 이론을 통해 정합적인 주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스틴의 화행 이론에 따르면 ‘누군가가 뭔가를 발화했다’는 문장은 세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그 발화자는 특정한 내용을 의미하는 표현을 말했다. 이런 의미일 때, 오스틴은 그 발화자가 내용발화행위 locutionary act를 했다고 말한다. 둘째, 그 발화자는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표현을 말함으로써by saying 그 결과로 어떤 행위를 수행했다. 이런 의미일

10) 게일 다인스, 신혜빈 역 (2020), p. 20.

11) 최근의 N번방 사태와 그 규모를 생각해 보면, 가학적 포르노가 우리 나라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예컨대, 랭턴은 맥키넨의 정의를 받아들여 포르노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고려는 단순히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흥분을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성을 ‘성적 대상, 사물, 상품으로 비인간화하고, 고통, 수치, 강간을 즐기고, 묶이거나 찢거나 절단당하거나, 명들거나, 물리적으로 상해를 입는, ...더럽거나 열등하게 보여지는, 피흘리고, 명들고, 다치지만 이것들이 성적 조건으로 만들어 지는 방식으로’(MacKinnon (1987), p. 176) 묘사하고 여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관련된다.”(Langton (2011), p. 425.)

때, 오스틴은 그 발화자가 발화매개행위(perlocutionary act)를 했다고 말한다. 셋째, 발화자는 어떤 내용을 말하면서 in saying, 혹은 말하는 가운데 어떤 행위를 수행했다. 다시 말해, 이 발화자의 발화는 그 자체로 어떤 행위이다. 이런 의미일 때, 오스틴은 그 발화자가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를 했다고 말한다.

이제 오스틴의 화행 이론에 기반하여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포르노의 내용발화행위가 종속화다. 이런 의미일 때 우리는 포르노의 내용에 주목한다. 즉, 이것은 포르노가 여성을 마치 성적 대상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일종의 성적 사물이나 상품처럼 묘사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이 말은 포르노의 발화매개행위가 여성 종속화라는 의미일 수 있다. 이런 의미일 때 우리는 포르노가 야기한 결과에 주목한다. 즉, 이것은 포르노의 결과로 여성이 종속적인 지위로 격하되거나 종속적인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가 여성 종속화라는 의미일 수 있다. 이때 우리는 포르노가 어떤 행위인가에 주목한다. 즉, 이것은 포르노가 그 자체로 여성을 종속화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랭턴은, 포르노가 여성에 대한 종속화라는 맥키넨과 드워킨의 주장이 바로 이 세 번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맥키넨의 주장은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에 관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맥키넨은 포르노의 내용이나 그 결과가 아니라, 포르노 그 자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포르노를, 이미지나 단어로 이루어진, 여성에 대한 시각적이고 성적인 명백한 종속화라고 정의한다.”¹³⁾

포르노가 그 자체로 일종의 종속화라는 맥키넨의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비판자들은 포르노가 일종의 표현, 혹은 발화에 불과하므로, 포르노

13) MacKinnon (1987), p. 176.

를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범주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랭턴은 이들이 발화수반행위라는 발화의 한 측면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발화수반행위를 고려한다면, 포르노가 일종의 종속화라는 맥키넨의 주장은 범주적 오류를 범하지 않은, 철학적으로 유의미한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랭턴의 주장대로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하는 발화수반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한 발화가 어떤 발화수반행위인지 잘 안다. 예를 들어, 주인이 하인에게 “물을 가져와”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 행위이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해야 행위다. 많은 경우에서 우리는 발화가 그 자체로 어떤 행위인지 잘 이해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발화가 어떤 발화수반행위인지 불분명한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발화수반행위인지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그리고 포르노는 바로 이런 경우다. 누군가는 포르노가 종속화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포르노가 성욕을 자극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제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랭턴은 일단 전형적인 종속화 사례를 제시하고 포르노를 그 사례에 대보려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 법령을 제정하면서 입법자가 “흑인의 투표를 금지한다”고 말했다고 하자. 이 발화는 흑인의 투표권을 금지하는 행위다. 더 나아가 이 발화는 더 열등한 존재라고 흑인을 등급매기고, 흑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며, 흑인으로부터 투표권을 박탈하는 행위다. 요컨대, 이 발화는 흑인에 대한 종속화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를 밝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포르노가 아파르트헤이트 발화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포르노는 여성을 인간 이하의 열등한 존재인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 등급매기고, 여성을 단지 성적 대상으로 대우하는 것, 다시 말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고 할 수 있다.¹⁴⁾ 그러나 포르노가 여성으로부터 어떤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¹⁵⁾ 따라서

아파트헤이트 사례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를 밝히지 못한다.

랭턴도 아파트헤이트 사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¹⁶⁾ 대신에 랭턴은 발화수반행위가 불분명한 발화의 발화수반행위를 밝힐 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최선의 설명에 의한 추론 방법이다. 많은 경우 발화의 발화수반행위는 그 발화의 결과들에 대한 좋은 설명을 제공한다. 예컨대, 철수가 나에게 “소금 있어요?”라고 말했고, 내가 철수에게 소금을 건네주었다고 하자. 내가 소금을 건네준 것은 철수가 나에게 **부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발화수반행위가 발화의 결과에 대한 좋은 설명을 준다면, 애매한 경우들에서 우리는 발화의 결과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해당 발화의 발화수반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가 여성 종속화라고 할 때, 포르노의 결과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억압, 폭력, 차별이 가장 잘 설명된다. 즉, 포르노는 여성에 대한 종속화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성에 대한 종속화가 유지되거나

14) 맥키넨은 포르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르노는 강간을, 폭행을, 성폭력을, …그리고 아동 성폭력에 성적 매력을 부여한다sexualize. 그리고 포르노는 … 이것들을 **찬양하고, 촉진하고, 인가하고, 정당화한다.**”(MacKinnon (1987), p. 171.) (강조는 원문)

15) 우리는 여기서 포르노의 발화매개행위와 발화수반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누군가는 포르노의 결과로 여성의 중요한 권리, 예컨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박탈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포르노의 발화매개행위에 관한 주장으로, 포르노가 그 자체로 여성에게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한다는,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에 관한 주장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16) 더 나아가 랭턴은 포르노와 같이 그 발화수반행위에 대해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발화는 대부분 해당 발화수반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들에 비해 뭔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불일치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발화수반행위는 대개 해당 발화수반행위의 전형적인 경우에 비해 뭔가가 부족하다. 전형적인 경우들에서, 사람들은 해당 발화수반행위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냥 알고, 또 그것들이 만족되었는지도 안다. (……) 그러나 발화 행위가 전형적인 경우에 못 미치면, 많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어떤 발화수반행위가 수행되었는가에 대한 논쟁이 생길 것이다.” (Langton (1993), p. 308.)

심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방법은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가 여성 종속화라고 볼 근거를 준다.

둘째 방법은 청자의 수용uptake에 호소하는 것이다. 청자가 해당 발화를 특정한 발화수반행위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 발화가 바로 그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된다. 앞의 사례에서 내가 철수의 발화를 부탁으로 인지했다는 것은, 철수의 발화가 부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포르노의 경우에는 청자들이 포르노를 서로 다른 발화수반행위로 수용한다. 포르노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남성들은 포르노가 성적으로 흥분시키고 성욕을 자극한다고 생각하며, 또 누군가는 포르노가 성에 대해 뭔가를 가르쳐준다고 생각한다. 즉, 청자의 수용에 호소하는 방법으로는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가 여성 종속화라고 할 수 없다.

셋째 방법은 문제가 되는 발화가 해당 발화수반행위의 중요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어떤 발화가 특정한 발화수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발화수반행위의 중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예컨대, “피고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합니다”라는 말이 유죄 판결 행위가 되려면, 발화자가 판사여야 한다. 즉, 발화자가 판사라는 것은 발화가 유죄 판결이라는 발화수반행위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랭턴은 더 나아가서, 중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다른 조건들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발화수반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모호함이나 무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들, 중요한 조건들이 만족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논증할 수도 있다. ‘그녀를 씹’는 명령행위의 패러다임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예컨대 발화자는 단지 충고를 할 의도였으나 발화자에게 관련된 권위가 있었고 적절한 맥락에서 발화된 경우에,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다.”¹⁷⁾

17) Langton(1993), p. 309.

즉, 랭턴은 한 발화가 어떤 발화수반행위의 중요한 조건들을 만족시켰다는 것은 그 발화를 해당 발화수반행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떤 발화가 종속화라는 발화수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발화자가 해당 영역에서 적절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파르트헤이트 사례는 전형적 종속화가 누군가를 등급매기고, 차별을 정당화하고, 중요한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임을 알려준다. 이 행위는 모두, 관련된 영역에서 적절한 권위를 가진 발화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이다. 판정할 권위가 없는 자는 누군가를 등급매기거나 순위매길 수 없으며, 법적, 혹은 물리적으로 권위가 없는 발화자는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종속화라는 발화수반행위의 중요한 조건은 바로 발화자가 해당 영역에서 적절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포르노는 종속화라는 발화수반행위의 중요한 조건을 충족하는가? 다시 말해, 포르노의 발화자는 관련된 영역에서 적절한 권위를 가지는가? 랭턴은 포르노의 발화자인 포르노 제작자가, 관련된 영역인 성적 영역에서 적절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경험적 자료들을 제시한다. 소년이나 성인 남성들이 여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 성적으로 적절한 행위인지를 배우기 위해 포르노를 보고, 포르노로부터 그런 것을 배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즉, 포르노 제작자는 성적 영역에서 적절한 권위를 가진 자로 여겨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포르노는 종속화라는 발화수반행위의 중요한 조건을 충족한다. 요컨대, 세 번째 방법은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하는 발화수반행위라고 볼 근거가 된다.

세 방법을 통한 검토는, 비록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포르노가 여성을

18) 위쇼(Warshaw)에 따르면, 소년의 50프로는 남성이 흥분했다면 여성을 강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Warshaw (1988), p. 120.), 또 남자 대학생의 30프로는 여성이 고통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즐거워할 때보다 더 성적으로 끌린다고 답했다.(Warshaw (1988), p. 93.)

종속화하는 발화수반행위라고 볼 근거를 제공한다. 포르노가 야기하는 결과들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가 종속화라는 것이며, 포르노 제작자는 성적 영역에서 일종의 선생으로, 권위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랭턴은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는 주장은 사기나 범주적 오류가 아니다. 이 주장은 철학적으로 유의미한 주장이며, 더 나아가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포르노는 실제로 여성을 종속화하는 발화수반행위일 수 있다.

III. 발화수반행위와 관습

랭턴은 포르노가 종속화한다는 맥키넨과 드워킨의 주장은 정합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스틴의 화행이론에 따르면 맥키넨과 드워킨의 주장은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가 종속화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랭턴이 오스틴의 화행이론을 잘못 이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앤토니는 오스틴의 화행이론에 따르면 종속화는 발화수반행위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가 종속화라는 말은 범주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랭턴을 비판한다.

앤토니는 오스틴의 화행 이론에서 발화수반행위는 **관습**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오스틴은 발화수반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확실히 우리는 똑같은 발화매개행위의 후속 결과를 비판습적 수단, 즉 도대체 관습적이지 않거나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은 비판습적 행위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 (……) 엄격히 말해 적용되는 수단이 관습적이지 않으면 발화수반행위는 있을 수 없다.”¹⁹⁾

19) 오스틴, 김영진 역 (1992), p. 149.

인용문에 따르면, 발화수반행위는 오직 관습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수행된다.²¹⁾ 다시 말하자면, 발화매개행위와 달리 발화수반행위는, 발화 맥락을 지배하는 관습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주례에게 “I do.”라고 발화한 것이 결혼하기라는 발화수반행위가 되는 것은 미국의 결혼 관습이 그렇기 때문이다. 만약 1900년 조선의 결혼식장이었다면 “I do.”라는 신랑의 발화는 결혼하기라는 발화수반행위가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이다.²²⁾ 요컨대, 발화수반행위는 관습 때문에 발생하는 행위다.

그런데, 발화는 어떤 효과들을 발생시킨다. 예컨대, 배에 삼페인 병을 깨트리면서 “이 배를 타이타닉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발화했다고 하자.²³⁾ 이 발화는 여러 가지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그 배는 ‘타이타닉’이라고 이름지어졌고, 사람들은 그 배를 ‘타이타닉’이라고 부른다. 배의 옆면에는 ‘타이타닉

오스틴의 *How to do things with words* (1962)를 인용할 때, 오역이나 용어 번역상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김영진의 번역(1992)을 그대로 채택했다.

20) 김영진의 번역에는 ‘perlocutionary act’가 ‘발화효과행위’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이 논문 안에서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발화매개행위’로 수정했다.

21) 오스틴은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발화수반행위는 관습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발화수반행위가 관습적인 행위, 즉 관습에 따라 행해지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오스틴, 김영진 역 (1992), pp. 134-135.)

“둘째, 우리는 또한 통보, 명령, 경고, 보증 등과 같은 발화수반행위를, 즉 어떤 관습적인 힘을 갖는 발화를 수행한다고 말했다.”(오스틴, 김영진 역 (1992), pp. 139-140.)

“수행된 발화수반행위illocution라는 전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도입한 것은, 적어도 일상적인 뜻에서 수행된 발화행위의 결과에 대한 지시가 아니라 발화를 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정과 관련이 있는 발화수반력의 관습에 대한 지시이다.”(오스틴, 김영진 역 (1992), p. 145.)

22) ‘I do’의 한국어 번역인 ‘네, 맹세합니다’라는 표현을 발화하는 것 역시 이 시기의 한국에서는 결혼 행위가 될 수 없다. 이 당시 한국의 결혼 관습에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말로써 맹세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3)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배의 명명식에서 뱃머리에 삼페인 병을 깨트린다.

‘이라고 쓰여질 것이다. 앤토니는 이런 효과들이 발화수반적 효과와 발화매개적 효과로 구분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발화수반적 효과와 발화매개적 효과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앤토니는 두 효과가 관습을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⁴⁾ 앤토니에 따르면, 발화수반적 효과는 오직 배경 관습에 배경 관습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효과다. 타이타닉 사례를 다시 생각해보자. “이 배를 타이타닉이라고 명명하겠다”는 발화를 배의 이름을 명명하는 행위로 구분하는 관습이 그 배가 타이타닉이라고 명명되는 효과를 낳는다. 이 관습이 없다면 그 발화는 명명 행위가 될 수도, 그 배가 명명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배가 명명됨은 이 발화의 발화수반적 효과다.

반면 앤토니는 발화매개적 효과는 비관습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²⁵⁾ 앤토니에 따르면, 발화매개적 효과는 발화 외부의 어떤 구조에 의해 인과적, 혹은 추론적으로 발생하는 효과이다. 따라서 발화매개적 효과는 비관습적 방법에 의해서도 성취될 수 있다.²⁶⁾ 예컨대, 위의 타이타닉 사례에서

24) “발화 행위의 발화수반적 효과는 … 오직 그 행위를 특정한 발화수반행위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그 배경 관습 때문에 얻어지는 효과다.” (Antony (2011), p. 392.)

25) “발화매개적 … 효과는 **비관습적** 수단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종류의 효과다. (……) 만약 효과가 발화매개적이라면, … 그 발화 행위 외부의 어떤 **구조**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인과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결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누군가의 추론을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다.” (Antony (2011), p. 393.) (강조는 원문)

26) 오스틴의 구분을 통해 두 효과의 구분을 보다 명료하게 만들 수 있다.

“발화수반행위는 관습적 행위이다. 이와 달리 발화매개행위는 관습적 행위가 **아니다**. (……) 재판관은 증언을 듣고서 어떤 발화행위와 어떤 발화수반행위가 수행되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어떤 발화효과행위가 성취되었는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 (오스틴, 김영진 역(1992, pp. 151-152.)(강조는 원문)

이 글에서 오스틴은 재판관이 증언만 듣고서 알 수 있는가의 구분을 통해 발화수반행위와 발화매개행위를 구분한다. 발화수반행위는 관습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시의 상황을 듣는다면 어떤 발화수반행위가 수행되었는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화매개행위는 발화 외부의 요인들, 예컨대 청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발화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증언

사람들이 그 배를 ‘타이타닉’이라고 실제로 불렀다면, 그것은 명명식이 야기한 현상이므로 인과적 효과이고, 따라서 발화매개적 효과이다.

이제 우리는 **관습적으로만** 발생하는 발화수반적 효과와 **인과적, 혹은 추론적으로도** 발생 가능한 발화매개적 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에 의거하여 앤토니는 종속화는 발화수반적 효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내가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종속화**는 발화수반적 효과의 후보로 부족하다. 한 인간 집단이 다른 인간 집단을 종속화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고, 그중 많은 방법에서 관습이 사용되지 않는다.”²⁷⁾
(강조는 원문)

요컨대, 앤토니는 종속화는 비관습적 방법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화수반적 효과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관습이 전혀 다른 두 부족에 대해, 한 부족이 폭력을 사용하여 다른 부족을 종속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개인이 다른 개인을 감금하고 폭행함으로써 종속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서 종속화는 비관습적 방식으로 발생한다. 그렇다면 앤토니의 기준에 따라, 종속화는 비관습적 방식으로도 발생 가능하므로 발화수반적 효과가 될 수 없다. 이로부터 앤토니는 종속화 행위는 발화수반행위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도 될 수 없다고 결론내린다.

을 통해서만 추측할 수 있을 뿐, 어떤 발화매개행위가 발생했는지 결정할 수 없다.

오스틴의 이 기준을 앤토니의 구분에 응용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언을 들으면, 재판관은 그 발화의 발화수반적 효과를 결정할 수 있다. 그 효과는 발화 상황과 발화 내용에 의해 관습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관은 발화매개적 효과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발화매개적 효과는 발화 외부의 인과적이거나 추론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증언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27) Antony (2011), p. 393.

이제 앤토니의 논증을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 ① 어떤 종속화가 비관습적 수단에 의해 발생한다면, 모든 종속화는 어떤 발화의 발화수반적 효과도 아니다.
- ② 어떤 종속화는 비관습적 수단에 의해 발생한다.
- ∴ 모든 종속화는 어떤 발화의 발화수반적 효과도 아니다.

그런데 앤토니의 논증에는 문제가 있다. 일단, ②를 주장하기 위해 앤토니는 폭력을 사용하는 물리적 종속화의 사례를 제시하는데, 이 사례가 과연 ②를 지지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앤토니는 종속화와 참정권 박탈을 대비하여, 종속화는 비관습적으로도 발생하는 반면 참정권 박탈은 관습적으로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앤토니가 폭력의 결과로 나타난 종속화 때문에 종속화가 비관습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동일한 논리로 참정권 박탈 역시 비관습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한 나라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가둬두고 평생 투표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 흑인은 **사실상**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이므로, 이런 비관습적 참정권 박탈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앤토니는 참정권 박탈은 관습적으로만 발생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앤토니는 ‘참정권 박탈’은 관습적인 것에만 한정하면서, 왜 ‘종속화’는 인과적인 것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여기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만약 참정권 박탈 논의가 정당한 것이라면, 앤토니는 물리적 종속화 사례를 ②를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앤토니는 참정권 박탈 역시 비관습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대응하더라도 이 논증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전제 ①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①은 사실 더 일반적인 전제인 ③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 ③ 유형 E에 속하는 어떤 효과 e가 비관습적 수단에 의해 발생한다면, E에 속하는 모든 효과가 어떤 발화의 발화수반적 효과도 아니다.

③이 옳다면, 앞서 말한 결과적 참정권 박탈은 어떠한 참정권 박탈도 발화수반적 효과가 될 수 없음을 함축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흑인의 투표를 금지한다”라는 아파르트헤이트 선언에 의한 참정권 박탈이 발화수반적 효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²⁸⁾ 법적 관습에 의해 이 선언은 그 자체로 흑인으로부터 투표권을 빼앗는 행위이며, 동일한 관습에 의해 흑인은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이 참정권 박탈은 발화수반행위로부터 관습적으로 발생한 발화수반적 효과이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마찬가지로, 어떤 종속화가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모든 종속화가 발화수반적 효과가 아니라고 할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

게다가 ③에는 오스틴의 화행 이론과도 비일관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③에서 앤토니는 이름이 동일하면 일괄적으로 발화매개적 효과든지, 아니면 발화수반적 효과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틴은 동일한 이름이 발화수반행위로도, 발화매개행위로도 쓰일 수 있다고 말한다.

“둘째, 똑같은 단어가 발화수반행위적으로도 발화효과행위적으로도 순수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tempting’과 같은 단어는 어느 쪽으로도 다 쉽게 쓰일 수 있는 단어이다.”²⁹⁾

여기서 오스틴은 ‘유혹하다’가 발화수반행위에도, 발화효과행위에도 사

28) 랭턴 (Langton (2011))은 동일한 효과가 발화수반적으로도, 발화매개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을 경기 사례를 통해 논증한다. 경기에 김이라는 동일한 사태가 “반칙”이라는 심판의 발화로부터 발생한 발화수반적 효과일 수도, 선수가 자살골을 넣어서 발생한 발화매개적 효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9) 오스틴, 김영진 역 (1902), p. 156.

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라면먹고 갈래?”라는 발화는 유혹이라는 발화수반행위이다. 반면 “이 옷 진짜 싸고 좋아”라는 발화는 자랑이라는 발화수반행위이면서, 결과적으로 청자가 똑같은 옷을 사도록 유혹하는 발화매개행위일 수 있다. 요컨대, 동일한 유혹당함은 발화수반적 효과도, 발화매개적 효과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유형의 사태라면 일괄적으로 발화수반적 효과이거나 발화매개적 효과라는 앤토니의 주장은 오스틴에 대한 옳은 해석이 될 수도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앤토니는 종속화는 발화수반행위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랭틴을 비판한다. 발화수반적 효과는 관습적으로만 발생하는 데, 종속화는 인과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앤토니의 비판은 두 가지 점에서 실패한다. 첫째, 앤토니는 물리적 종속화와 관습적 종속화를 혼용하는 애매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 발화수반적 효과에 대한 앤토니의 기준은 적절치 않다. 이 기준은 발화수반적 효과를 제대로 구분해주지 못하며, 오스틴의 이론과도 비일관적이다.

그러나 발화수반행위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관습이 중요하다는 앤토니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어쨌건 오스틴도 발화수반행위는 관습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발화가 어떤 발화수반행위가 되는가는 어떤 관습 하에서 발화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발화가 비구두적으로 발생했을 때 더욱 그렇다.

“엄격히 말해 적용되는 수단이 관습적이 아니면 발화수반행위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발화수반행위를 비구두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수단은 관습적이어야 한다.”³⁰⁾

우리가 ‘포르노’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대개 언어와 이미지를 모두 포함하는 어떤 표현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포르노 발화는 대부분

30) 오스틴, 김영진 역 (1992), p. 149.

비구두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인가를 결정하려면 관습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요컨대,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하는 발화수반행위냐는 물음은 사실상 우리 사회의 관습 하에서 포르노는 어떤 행위로 분류되는가라는 물음인 것이다.

그러나 관습에 의거해서 발화수반행위를 판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앤토니의 실패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어떤 종속화가 관습적으로만 규정되는 행위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다. 앤토니는 물리적 종속화와 관습적 종속화를 혼동하는 애매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디까지가 물리적 종속화이고 어디부터가 관습적 종속화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아니다. 게다가 물리적 종속화도 사실상 특정 관습 하에서만 종속화로 분류된다³¹⁾는 사실은 관습의 범위를 판별하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둘째, 발화수반적 효과는 관습적 효과지만, 어떤 사태가 발화수반적 효과가 되기 위해서 그 유형의 모든 사태가 관습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동일한 유형의 사태가 관습적으로도, 인과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화수반적 효과에 대해 논의할 때, 어떤 유형의 사태를 일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IV. 발화 맥락과 발화수반행위

랭턴은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는 주장이 철학적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이 주장은 실제로 설득력이 있다고 말한다. 앤토니와 달리 술은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는 주장이 철학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음은 인정한다.³²⁾ 그러나 술은 일부의 경우에만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는 점에서,

31) 살아서 폭력에 많이 노출되고 남에게 많이 굴복해야 영혼이 더욱 고귀해진다고 믿는 관습이 있는 부족을 생각해보라. 이런 부족이라면 폭력을 통해 굴복했다고 해서 그것을 종속화되었다고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랭턴을 비판한다.

솔은 화행 이론의 핵심이 발화, 즉 표현의 **사용**에 있다고 보았다. 표현 자체는 어떠한 행위도 될 수 없으며,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동일한 표현이 서로 다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네”라는 표현은 프로포즈를 승낙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즉, 발화가 어떤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는가는 **발화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

음성 언어와 달리 기록물의 경우는 발화 맥락이 무엇인지가 단순치 않다. 기록물을 만들 때에도 표현이 사용되고, 기록물을 사용할 때에도 표현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둘 중 무엇이 기록물의 발화 맥락인가? 솔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다음 사례를 제시한다. 영희는 “네”라고 적힌 사인을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한다. 결혼하자고 묻는 철수에게도 사용했고, 당신이 이 책을 훔쳤냐고 묻는 도서관 직원에게도 사용했다. 철수에게 답할 때 영희는 승낙 행위를 한 것이고, 도서관 직원에게 답할 때는 범죄 인정 행위를 한 것이다. 이처럼 사용할 때마다 발화수반행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기록물의 제작 맥락이 아니라 사용 맥락이 발화 맥락임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 기대어 솔은 포르노의 발화 맥락을 결정한다.

“포르노물이 만들어진 시점이 있고, 그것이 시청되는 여러 시점들이 있다. 에텔과 사인의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된다면, 포르노물을 시청하는 시점이 그 발화수반력을 결정하는 시점인 것처럼 보인다.”³²⁾

32) 엄밀히 말해, 솔은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하는 발화수반행위이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비정합적이라고 지적한다. 포르노물은 일종의 표현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는 발화 행위일 수 없고, 특정 맥락에서 발화된 표현만이 발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솔은 이 주장이 유의미해지려면 포르노 **시청**이 여성을 종속화하는 발화수반행위라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3) Saul (2006), pp. 237-238.

이 인용문에서 술은 제작과 시청 맥락을 포르노 발화 맥락의 두 후보로 제시한다. 그리고 위 사례에서 본 것처럼 기록물의 사용 맥락이 발화 맥락이라면, 포르노의 경우에도 제작이 아니라 **시청** 맥락이 포르노의 발화 맥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포르노의 사용 맥락은 포르노를 시청하는 맥락이므로, 포르노의 발화 맥락 역시 시청 맥락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청 방식이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은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으로, 성교육 현장에서는 성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포르노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종속화하는 것으로 포르노를 시청한다. 즉, 포르노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발화수반행위가 된다. 이제 술은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 포르노는 일부 시청 방식에서만 여성을 종속화한다. 따라서 포르노가 일반적으로 종속화하는 발화수반행위라는 랭틴의 주장은 옳지 않다.

그러나 술의 논증에는 문제가 있다. 포르노 제작은 의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면에서 “네” 사인과 포르노 사이에는 유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사인의 제작자는 특정한 의도 하에서 이 사인을 제작하지 않았다. 이 사인은 처음부터 **의도중립적**으로 제작된 사인이다. 따라서 사용 맥락이 발화수반행위를 결정하는 유일한 맥락이다. 반면, 특정한 **의도** 하에서 제작된 기록물의 경우에는, 제작 맥락 **또한** 발화수반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범인이 형사에게 자백 편지를 썼고, 한 달 뒤에 형사가 그 편지를 읽었다고 하자. 이 편지는 자백이라는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한다. 이때 이 편지의 발화수반행위는 형사가 읽을 때가 아니라, 범인이 자백할 의도로 그 편지를 썼을 때 결정된다. 이처럼 특정한 의도 하에 제작된 기록물은, **제작** 맥락이 그 발화수반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³⁴⁾ 그리고 포르노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기록물은

34) 이때 범인은 자백 편지의 제작자일 뿐 아니라 사용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 사례가 다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이 혼동은, 이 사례에서 제작 맥락이 자백 편지의 발화수반행위를 결정하는 유일한 발화 맥락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는 술의 논증에 대한 반례로 성립한다. 첫째, 술은 사용 맥락만이 기록물의

의도중립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포르노 제작자는 뭔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포르노를 제작했을 것이다. 따라서 “네” 사인과 달리, 포르노의 경우 발화 맥락에서 제작 맥락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유비를 성립시키기 위해 포르노에 의도중립적인 제작 단계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작 단계를 설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의도중립적인 원본 제작 단계를 제외하더라도, 포르노 제작에는 편집, 유통 단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도중립적으로 제작된 원본을 포르노로 편집하고 유통하는 일³⁵⁾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원본을 **사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용 맥락이다. 따라서 포르노 제작을 의도중립적인 단계로 설정하더라도, 시청 맥락이 발화 맥락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즉, 포르노의 발화 맥락을 보려면 시청 뿐 아니라 편집, 유통 맥락도 고려되어야 하며, 바로 이 점에서 시청 맥락만을 고려한 술의 비판은 적절치 않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술은 포르노의 발화 맥락인 시청 맥락을 볼 때, 일부의 포르노 시청에서만 포르노가 종속화라는 발화수반행위라고 랭턴을 비판한다. 그러나 술의 비판은 성공할 수 없다. “네” 사인과 달리 포르노는 제작 단계가 의도중립적이지 않으며, 설사 포르노의 원본 제작 단계를 의도중립적이라고 설정하더라도 원본에 대한 의도적 사용 단계인 편집, 유통 맥락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청 맥락만이 발화 맥락이라는 결론은

발화 행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작 맥락 **또한** 기록물의 발화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만으로 술에 대한 반례는 성립한다. 둘째, 이 사례에서는 제작 맥락이 실제로 기록물의 발화 행위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범인이 자백한 시점이 언제인가를 생각해보자. 형사가 편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범인이 편지를 작성했을 때, 작성한 시점이 범인이 자백한 시점이다. 요컨대, 이 경우 기록물의 제작 맥락이 그 발화수반행위를 결정한다.

35) 랭턴 (Langton (1993), pp. 321-322.)의 사례는 편집과 유통이 특정한 의도 하에서 원본을 사용하는 일임을 잘 보여준다. 린다 러브레이스는 포르노 산업에서의 고통과 억압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Ordeal* (1980)이라는 책을 썼다. 이후 남성 잡지에서는 이 책에 관한 기사를 섹스 판타지 기사와 난교 기사 사이에 수록함으로써, 이 책이 일종의 포르노로 읽히도록 만들었다. 편집자는 *Ordeal*을 사용하여 일종의 포르노를 만들어낸 것이다.

도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술의 실패로부터 두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포르노의 발화수반 행위라는 문제에서 제작자의 의도가 쉽게 배제될 수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 포르노는 특정한 의도 하에서 제작된 것이므로, 그 의도에 대한 고려 없이 발화수반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둘째, 포르노는 하나의 표현물이므로 어떤 발화수반행위가 되려면 발화 맥락을 결정해야 한다는 술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포르노의 발화맥락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포르노에 관련된 여러 맥락이 있으며, 시청 맥락 외에서도 포르노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된다. 따라서 시청 맥락이 바로 발화 맥락이라고 단순히 결론내릴 수는 없다.

V. 발화자의 의도와 발화수반행위

술은 실제 시청 맥락이 포르노의 발화 맥락이라고 주장한다. 술의 입장에 따르면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에 제작자의 의도는 무관하다. 그러나 비양키는 제작자의 의도가 발화수반행위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시청 맥락이 아니라 제작자가 어떻게 의도했는가가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록물의 발화수반행위를 결정하는 맥락을 찾기 위해 비양키는 기록된 지표사의 지시어 결정에 관한 프레델리의 이론에 의존한다. 프레델리³⁶⁾는 기록된 지표사의 지시어를 결정하는 것은 그 기록물의 **실제 사용 맥락**이 아니라 기록자가 **의도한 해석의 맥락**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영희가 10시에 읽기를 의도하면서 철수가 “2시간 뒤에 올게”라는 쪽지를 썼다고 하자. 이 경우 영희가 실제로는 몇 시에 그쪽지를 봤든, ‘2시간 뒤’는 12시를 가리킨다.

36) Predelli (1998a; 1998b)

철수가 의도한 해석의 맥락이 10시였기 때문이다.

비앙키는 발화수반행위도 기록된 지표사의 지시어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지표사와 발화 행위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면, 우리는 …술에 반하는 흥미로운 논증을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의도된 맥락**이다. 의도된 맥락이 고정되어야만 발화 행위의 발화수반력도 고정된다.”³⁷⁾
(강조는 원문)

기록된 지표사의 지시어가 의도된 맥락에 의해 결정되듯, 발화의 발화수반행위도 의도된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는 실제 시청 맥락이 아니라, 포르노 발화자인 포르노 제작자가 의도한 해석 맥락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로부터 비앙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약 포르노 제작자가 포르노가 여성 종속화가 되도록 의도했다면, 포르노는 여성 종속화라는 발화수반행위이다.

그러나 비앙키의 논증에는 문제가 있다. 첫째, 프레텔리의 지표사 이론과 기록물의 발화수반행위 사이에 왜 유비추론이 성립하는가를 비앙키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유비추론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논변은 성공할 수 없다.³⁸⁾ “2시간 뒤에 올게”라는 쪽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이때 ‘2시간 뒤’의 지시어는 실제 사용 맥락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요컨대, 모든 기록된 지표사의 지시 대상이 기록자가 의도한 해석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된 지표사의 지시 대상을 모두 의도된 맥락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따라서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가 제작자가 의도한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미콜라³⁹⁾는 비앙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포르노 제작자가

37) Bianchi (2008), p. 314.

38) 미콜라Mikkola (2008)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39) Mikkola (2008; 2019; 2020)

포르노로 여성 종속화를 의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앙키 결론의 전건이 틀렸다는 것이다. 솔⁴⁰⁾은 포르노 제작자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를 의도했다고 주장하는데, 미콜라가 보기에 비앙키는 포르노 제작자의 의도가 이익 창출이 아니라 여성 종속화라고 볼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고, 제시할 수도 없다. 비앙키에게 발화자의 의도를 아는 것은 경험적인 영역이므로, 철학자인 비앙키의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콜라는 포르노 제작자가 포르노로 여성 종속화를 의도했다는 비앙키의 전건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콜라의 이 비판이 성공적인지는 의심스럽다. 미콜라는 포르노 제작자의 의도가 이익 창출이 아니라 여성 종속화라고 볼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데, 실제로 제작자가 이익 창출이나 여성 종속화 중 한 가지 의도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위를 하면서 행위자는 다양한 의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예컨대, 목수는 톱질을 하면서 줄을 당기려는 의도를, 나무를 자르려는 의도를, 집을 잘 지으려는, 돈을 벌려는 의도를 모두 가질 수 있다. 목수가 집을 잘 지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벌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포르노 제작자도 이익 창출이나 여성 종속화 중 한 가지 의도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포르노 제작자의 의도가 이익 창출이 아니라 여성 종속화라고 볼 이유를 제시하라는 미콜라의 요구는 부당하다.⁴¹⁾

40) Saul (2006), p. 243.

41) 미콜라는 비앙키가 포르노 제작자의 의도가 여성 종속화라고 주장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전건은 명백히 참이 아니다. …솔은 포르노 제작자들이 아마 그냥 돈을 버는 것을 의도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앙키는 동의하지 않는다. 비앙키는 이익을 남기는 것은 여성을 종속화하려는 포르노 제작자의 의도의 발화매개적 효과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 종속화 또한 이익 창출 의도의 발화수반적 효과일 수 있다.” (Mikkola (2008), p. 317.)

이 비판은 본문에서 말한 것과 다른 의미에서도 부당하다. 실제로 미콜라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앙키의 2008년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비앙키는 포르노 제작자의 의도가 여성 종속화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앙키는 미콜라의 논의가 일종의 허수아비 논증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비양키는 제작자의 의도에 주목하여 술을 비판한다. 발화자가 의도한 맥락이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미콜라는 포르노 제작자가 이익 창출이 아니라 여성 종속화를 의도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비양키를 비판하지만, 오히려 이익 창출과 여성 종속화 중 한 가지 의도만 가져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비판은 성공할 수 없다. 비록 미콜라의 비판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비양키의 논변에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비양키가 의존하고 있는 지표사 이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제작자가 오직 하나의 해석 맥락만을 의도하고 기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많은 경우 기록된 지표사의 지시 대상은 사용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비양키와 미콜라의 논의로부터 발화자의 의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포르노 제작자가 여성을 종속화하려는 의도를 가졌냐는 문제는 포르노 종속화가 이익 창출에 의도를 가졌다는 사실로부터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포르노 제작자는 다양한 의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포르노 제작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를, 여성을 종속화하려는 의도를, 그리고 화면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하려는 의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포르노 제작자가 한 가지 의도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할 어떠한 이유도 되지 않는다.

행위자가 스스로는 명시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발화자의 의도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자기 일이 사람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고 돈을 빼앗는 일임을 알고서 보이스 피싱을 저지른 철수를 생각해보자. 철수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만을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철수가 거짓된 정보를 주고 돈을 빼앗을 의도를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철수가 **우연히** 거짓된 정보를 주고 돈을 빼앗았다고 할 수는 없다. 철수의 몸이 그런 방식으로 움직인 것은 사고가 아니다. 철수에게는 거짓된 정보를 주고 돈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다시 말해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었다. 만약 철수에게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포르노 제작자가 종속화하려는 의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포르노 제작자에게 그런 의도가 없음을 함축하지 않는다. 포르노 제작자에게 종속화하려는 의도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특정한 행위자에게 종속화를 하려는 의도를 귀속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며, 이는 행위와 의도에 관한 독립적인 문제이다.

VI. 결론

랭턴은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한다는 맥키닌과 드워킨의 주장이, 오스틴의 화행 이론에 근거하여 철학적으로 유의미한 주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가 여성에 대한 종속화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랭턴은 실제로 포르노는 여성을 종속화하는 발화수반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랭턴의 주장은 많은 비판에 직면해있다. 이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첫째, 종속화는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앤토니는 발화수반행위가 관습적으로 결정되는 행위이므로 종속화는 어떤 발화의 발화수반행위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앤토니의 비판은, 앤토니가 물리적 종속화와 관습적 종속화를 혼용하는 애매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발화수반적 효과에 대한 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실패한다.

둘째, 술은 포르노가 실제로 여성을 종속화하는 발화수반행위라는 랭턴의 주장이 약화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포르노의 발화 맥락은 시청 맥락이며, 일부 시청 방식에서만 포르노가 종속화라는 발화수반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포르노의 제작은 의도중립적이지 않고, 설사 의도중립적 제작 단계를 설정하더라도 의도적인 편집, 유통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포르노의 시청

맥락이 발화 맥락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술의 비판은 실패한다. 비양키는 술에 대항하여 랭턴을 옹호하려 한다. 실제 사용 맥락이 아니라 발화자의 의도한 맥락이 발화의 발화수반행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물의 발화수반행위는 실제 사용 맥락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양키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않다.

이 논문의 목적은 랭턴이 직면한 비판들과 그 후속 논의들을 검토하고, 그러한 비판들이 성공적인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만약 이 글이 성공적이라면, 랭턴에 대한 비판들은 실패했으며, 우리는 랭턴의 논증이 아직은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잠정적 결론이다. 그러나 기존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로부터, 우리는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에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 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가 여성 종속화 인지를 물을 때, 우리는 물리적 종속화가 아니라 관습적 종속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앤토니의 실패는 물리적 종속화와 관습적 종속화를 나누는 것이 단순치 않은 문제임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종속화 주장이 성공하려면, 관습적 행위라는 행위 이론의 문제에 관한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포르노는 의도중립적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를 판별하려면 제작자의 의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는 스스로가 의식하지 못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포르노 제작자의 의도를 판별하는 문제는, 행위와 의도에 관한 의도 이론의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랭턴의 종속화 주장이 성공적인가를 최종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습, 의도, 행위에 관한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런 연구를 통해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를 검토하는 일은 후속 작업의 몫이 될 것이다.

만약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하는 발화수반행위라면, 포르노는 여성의 평등할 권리를, 다시 말해 여성의 시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르노가 여성의 시민권을 침해한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포르노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법적 규제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포르노의 발화수반행위 외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포르노

제작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포르노의 악영향은 무엇인가? 법적 규제가 포르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포르노 검열, 혹은 규제에 대해 말하려면 먼저 이런 문제들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글이 성공적이라고 해도 포르노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포르노가 여성을 종속화하는 발화수반행 위이고, 그래서 여성의 시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포르노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는 더 이상 옹호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로 포르노를 옹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표현의 자유에 기반하여 포르노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논변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참고문헌

- 심영희 (1994), 「포르노의 법적 규제와 페미니즘」, 『한국여성학』, 10: 120-180.
- 윤진숙 (2011), 「포르노그래피와 그 문제점」, 『젠더법학』, 3: 71-89.
- 주동률 (2006), 「포르노그래피, 자유주의, 페미니즘」, 『철학사상』, 23: 137-166.
- 홍남희 (2020), 「여성혐오적 제도로서 포르노그래피 소비 문화」, 『미디어, 젠더 & 문화』, 35: 103-137.
- 게일 다인스 (2014), 신혜빈 역(2020), 『포르노랜드』, 인천: 열다북스.
- 수전 이스턴 외 (1994), 김성한 역(2010), 『성과 윤리』, 파주: 아카넷.
- 오스틴 (1962), 김영진 역 (1992), 『말과 행위』, 파주: 서광사.
- Antony, Louise (2011), “Against Lanton’s Illocutionary Treatment of Pornography”, *Jurisprudence*, 2: 387-401.
- Austin, J.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ianchi, Claudia (2008), “Indexicals, speech acts and pornography”, *Analysis*, 68(4): 310-316.
- Langton, Rae (1993), “Speech Acts and Unspeakable Acts”, *Philosophy & Public Affairs*, 22: 293-330.
- _____ (2011), “Response”, *Jurisprudence*, 2: 425-431.
- MacKinnon, Catharine (1987), *Feminism Unmodified*, 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 Mikkola, Mari (2008), “Contexts and pornography”, *Analysis*, 68(4): 316-320.
- _____ (2019), *Pornogra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20), “Fixing pornography’s illocutionary force: Which context matters?”. *Philosophical Studies*, 177: 3013-3032.
- Parent, W.A. (1990), “A Second Look at Pornography and the Subordination of Women”, *Journal of Philosophy*, 87(4): 205-211.
- Predelli, Stefano (1998a), “Utterance, interpretation, and the logic of indexicals”. *Mind and Language* 13: 400-414.
- _____ (1998b), “I’m not here now”, *Analysis*, 58: 107-115.

Saul, Jennifer (2006), "Pornography, Speech Acts and Context",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106(1): 229-248.

Tong, Rosemarie (1984), *Women, Sex, and the Law*, NJ:Rowman&Allanheld.

Williams, Bernard (1979), *Report of the Committee on Obscenity and Film Censorship*, London: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Warshaw, Robin (1988), *I never call it rape. The Ms. Report on Recognizing, Fighting and Surviving Date and Acquaintance Rape*, New York: Haper Perennial.

American Booksellers, Inc. v. Hudnut, 598 F. Supp. 1316 (S.D. Ind. 1984)

American Booksellers, Inc. v. Hudnut, 771 F.2d 329(7th Cir. 1985)

【Abstract】

Pornography and Subordination

Lim, Ye-In

Contrary to the general criticism of pornography for its content, MacKinnon and Dworkin argues that pornography should be criticized because it subordinates women. Many have criticized the argument that pornography subordinates women as philosophically indefensible. Against this criticism, Langton argues that based on Austin's theory of speech act, the subordination claim can be philosophically defensible. Furthermore, Langton argues that the subordination claim is pretty plausible.

Nevertheless, Langton's argument now faces much criticism. Some Critics argue that the subordination claim is still philosophically indefensible. The others criticize that the subordination claim is not plausibl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riticisms and their subsequent discussions and check whether Langton's argument can survive. For this, I will briefly introduce Langton's argument in chapter II. In III, I will examine Antony's criticism that the subordination claim is philosophically indefensible. In IV, I introduce Saul's objection to plausibility of subordination claim, and I will examine whether the criticism is successful. In V, I will discuss the argument of Bianchi against Saul and Mikkola against Bianchi.

【Keywords】 Pornography, Speech Act, Subordination, Langton, Austin

논문 투고일: 2020. 10. 05.

심사 완료일: 2020. 10. 26.

게재 확정일: 2020. 10. 26.

